2021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14일 ~ 6월 21일까지 (6일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O 감사결과 총 15건(본처분 12건, 현지처분 3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 O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수범사례에 대하여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감사결과 내역

수기의원				처 분 현 황						
	총괄현황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차(명)
계	본처분	현지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 통보	계	추징・화수	환급 • 감액	훈계
15	12	3	15	3	6	6	2/6,796	2/6,796	_	_

2021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수범사례】

수범사례 1

조직개편 및 상임이사 제도 도입을 통한 재단의 경쟁력 강화

O 재단의 조직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개선하고자, 재단 명칭 변경 및 상임이사직 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 기관으로써의 경쟁력 강화 도모

□ 현 황

- O 타시도 복합법인(장학, 평생교육)의 경우 조직통합에 따른 재단 명칭 통합이 이루어 졌으나,
- O 우리시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이 재단 內에서 이원화된 형태로 운영되어 전 사적인 조직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발생(행정사무감사 및 경영평가 지적사항)
 - → 총괄관리자 부재에 따른 인재육성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아우르는 재단 차원의 조직 비전 및 경영성과 관리 미흡
 - → 총무·인사·예산 업무의 중복 수행으로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 → 재단 內 평생교육업무의 독립성 및 정체성 부재
- O 상임이사직 신설을 통해 재단의 체계적이고 실행력 높은 조직 체계 구축 필요

□ 추진실적

- 재단 명칭 변경: (재)인천인재육성재단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O 상임이사직 신설
 - 이원화된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총괄 할 상임이사 직위도입
 - 이사장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상임이사 선임 및 실질적 역할 부여 (원장)
 - ※ 기관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기관의 대표자는 시장님 유지

- O 사무처장직 신설
 - 내부행정을 총괄 할 사무처장 직위 도입(부원장, 임기 2년)
 - 장학사무국장과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이원화 되어 있던 예산·회계·인사· 총무 및 법인업무 총괄
- O 기구 명칭변경 및 팀제 개편
 - 1단 1실 2팀 2센터(장학사업단, 정책연구실, 경영지원팀, 평생교육팀, 민주시민 교육센터, 문해교육센터)
 - ※ 경영지원팀에서 재단 이사회, 의회, 인사·조직, 예산, 회계 등 취합·조정·지원 업무 수행

□ 기대효과

- O 이원화된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통합 기관으로써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장학사무국의 재단 총괄업무를 경영지원팀으로 독립시켜 장학 및 인재육성 고유사업 추진 강화
- 예산·회계·인사·총무 업무의 일원화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

수범사례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

O 재단 전문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통하여 평생교육업무의 안정적·발전적 수행 및 직원의 조직역량 강화 도모

□ 현 황

- 진흥원 평생교육사의 비정규직 신분에 따른 빈번한 입·퇴사 및 우수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조직 역량이 타시도 진흥원에 비하여 정체됨
 - * 평균근로기간은 1.4년 정도에 불과함

□ 추진실적

- 개인별 근로기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성과계약평가를 통하여 전환 후보자를 선정하고 근무성과·직무능력·직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등급 결정
 - ※ 전환대상자 : 2017. 8월 / 총4명(라급 2명, 마급 2명)
 - ※ 성과계약평가 불량자는 전환 후보자에서 제외
- 전환 후보자의 전환 可否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O 전환결정 : 이사장 최종 결정
- O 전문계약직 4명 정규직 전환 (2019. 7월)

□ 기대효과

- 근무성과 우수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통하여 근무성과 향상 및 재단 평생교육진흥 업무의 안정적・발전적 수행
- O 향후 신규채용 시 우수인력 채용 등 진흥원의 조직 역량 강화 도모

2021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인 천 광 역 시

개선요구・통보

제 목 인사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이하'행정안전부 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해당 지침을 반영하여 진흥원의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지침은 제정(2014. 9. 25.) 이후 최근(2019.12.31.)까지 총 6회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인사규정」(최근 개정 2021.2.24.)은 아래와 같이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1. 직원 징계기준 미반영

행정안전부 지침 Ⅲ. 직원의 인사 7. 징계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지방 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 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 「인사규정」을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기준을 「인사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표] 지침 등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진흥원 인사(징계)규정

구	분	지침 등 관련 기준	진흥원 인사규정	비고
(1) (3) (2)	정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중 보수는 전액 삭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중 보수의 2/3을 감하여 지급	
징계 효력	강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중 보수의 전액 삭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	
②징계 감경·가중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징계 양정을 감경하거나 가중 처벌하여야 함.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③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1]과 같이 마련하도록 함.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④채용비리 징계기준		[별표 2]와 같이 마련하여야 함.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⑤징계시효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5년)	·금품 관련 비위는 5년 ·비금품 관련 비위는 3년	

- ※ 관련기준: ① 지방공무원법 제71조, ②~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채용비위 통제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미비

행정안전부 지침 Ⅲ. 직원의 인사 4.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하며,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절차)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 「인사규정」에는 비위 채용자 통제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절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 (개선)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비위 등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직원 징계기준, 채용비위통제 기준 등을 반영하여 진흥원 「인사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이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음주운전 징계기준

n m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초 음주운전 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거 주지게	정직~감봉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 취소된 상태에서	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정직~감봉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음주운전으로 경싱 있는 교통사고를	∤해 또는 물적 피해가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 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3회 이상 음주운	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방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 있는 교통사고를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별표 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	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경과실	고의·중과실	T T - "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¹⁾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경과실	고의·중과실	T T - "
부적정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11 O T -10) -1 T A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3) 미준수	T T - "
채용절차2) 미준수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4)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감봉)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5)	중경	당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 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 ⁶⁾ 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¹⁾ 응시ㆍ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ㆍ자격증ㆍ경력ㆍ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²⁾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³⁾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⁴⁾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⁵⁾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 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⁶⁾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직원 채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용

1. 정규직 직원 채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시민의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규직 직원을 [표 1]과 같이 신규채용 하였다.

[표 1] 일반직 2급 및 5급 직원 신규채용 공고현황

채용공고일	채용직급	채용분야 및 인원	전형방법	비고
2020	일 반5급	행정 1, 평생교육 1	·1차 서류전형(15배수)	
2021.☆.☆.	일 반2급	행정 1, 평생교육 1	·2차 필기전형(4배수)	
	일 반5급	행정 1, 평생교육 2, 전산 1	·3차 면접전형(2배수)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가. 채용공고 시 일부 자격요건 누락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이하 행정안전부 지침이라 한다.) Ⅲ. 직원의 인사에서는 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흥원 「인사규정」에는 직원의 직렬별 직급별 임용기준을 [표 2]와 같이 명시하면서, 직무분야에 따라 관련 전공 및 필수 자격증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및 관련 분야의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진흥원의 2021년도 일반직 2급·5급 행정분야 채용공고 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보면 ([표 2] 참조),

- 일반2급의 경우 「인사규정」에서는 ②, ③, ④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공고 시에는 ②, ③, ④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 일반5급의 경우 「인사규정」에서는 B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공고 시에는 B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반2급의 경우 ②, ③, ④에 해당하는 사람과 일반5급의 경우 ®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 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2021년 일반직 직원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 등

□ 진흥원「인사규정」상 임용 자격기준과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

지려	XI 7	그저시 이유 되거기즈		채용공고
직렬	직급	규정상 임용 자격기준	분야	자격요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상당)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상당)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②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_
-1		③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행정	_
일반	2급	2급 ④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⑤학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⑥1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_
				·학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1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①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_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상당)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상당)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_
일반	5급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D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⑥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_

□ 관련학과 및 해당경력

분야별	관련학과	해당경력(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참조)				
평생교육	교 육 학 평생교육학 사회교육학 국제평생교육학 그 외 교육관련 학과	○평생교육법 제29조에 의한 각급 학교 및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각급 지역교육청 및 민간 평생교육 관련업무 추진부서 근무경력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성인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교육, 시 민교육 분야 등				
행 정	_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 ○ 법령에 의한 설립 또는 지원단체(법인)로서 장학, 교육,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근무경력 ○ 공공기관 일반행정 분야 근무경력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서류전형 기준 부적정

행정안전부 지침 Ⅲ. 직원의 인사에서는 시험의 방법으로 서류전형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기관에서는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경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합격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의 일반직 직원 채용공고에 따르면([표 3] 참조).

- (1) 2021년 일반직2급 지원자 서류심사기준으로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성 (40점), 경력의 적합성(40점),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20점) 등 정성평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 (2) 2020년 및 2021년 일반직5급 심사의 경우 지원자의 서류전형 ②심사배점 기준을 정량평가(30점) + 정성평가(70점)로 정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능력 등 정성평가 기준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 (3) 2020년 및 2021년 일반직5급 심사의 경우 서류전형 정성평가기준과 면접전형의 평가기준을 유사하게 제시하여 전형방법의 차별성을 약화시켰다.
 - 서류전형 정성평가기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 능력
 - 면접전형 정성평가 기준: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도

[표 3] 2020년 및 2021년 일반직 직원 채용시험 공고현황

구분	전형 방법	배점	세 부 내 역
	서류 심사	_	○ 서류심사기군 - (필수요건) 자격기준 적합여부(적/부) - (일반요건)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성(40점), 경력의 적합성(40점), 전응능력 및 활용가능성(20점) - 서류심사 합격자 :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자격기준 부적합자는 불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항목별 개인별 수준을 확인하고, 향후 업무성과 및 조직생활 적응력 예측
2021 일반적 2급	면접 심사		○ 면접심사기준 <연구직> - PT 발표면접: 직무관련 제시된 주제에 대한 PT발표 및 질의응답 - 전문지식과 연구수행능력(5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창의성(30점), 지역에 대한 이해 등(20점) - 항목별 평가방법: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성평가 <일반직> - 직무 이해도(20점), 조직 이해도(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 능력(20점) - 항목별 평가방법: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성평가
2020, 2021 일반적 5급	서류전형	100	①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역량기술서)를 기준으로 심사 ②심사배점 기준: 정량평가 30점 + 정성평가 70점 (총점 100점) ③정량평가 기준(30점) - 평가 항목별 배점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합계 14점 12점 4점 30점 - 교육사항: 유관으로 인정된 관련 교육사항 당 1점(최대 14점) - 경력사항: 인정된 관련 경력 만 1년 당 2점(1년 단위 초과 분 절삭, 최대 12점) - 자격증: 인정된 관련 자격증 1건 당 최대 4점(최대 2건/4점 만점) ④정성평가 기준 (70점, 심사위원별 등급 평가 방식) - 평가 항목별 배점 자기 지무수행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출 력 가 성점 14점 14점 14점 14점 14점 14점 14점 70점 - 항목별 평가방법(정성평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14점~12점 11점~9점 8점~6점 5점~1점 0점
	면접 전형	100	○ 직무 이해도(20점), 조직 이해도(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 능력(20점) - 항목별 평가방법 :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성평가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미흡 20점~17점 16점~13점 12점~9점 8점~5점 4점이하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진흥원에서는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및 사무보조원을 [표 4]와 같이 채용하였다.

[표 4] 사무보조원 및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채용현황

채용공고일	채용분야 및 인원	수 행 직 무	근무기간	전형방법
2020.0.0.	사무보조 1	인천평생교육 통계조사	3개월	
2020.☆.☆.	기간제 계약직 1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평생교육 공모사업 운영 등	15개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2021.�.�.	기간제 계약직 1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장학사업단 업무보조	18개월	2시 교육교육
2021.△.△.	사무보조 1	장학생 선발 관련 보조	2개월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가. 서류전형 기준 부적정

진흥원 '계약직근로자 인사규정' 제8조(채용방법)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 채용을 위한 공개모집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되 재단 인사규정 및 정부와 인천시의지방 출연기관 인사지침을 준수하여 일반직 및 전문계약직 직원 공개모집 방식의 예에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침 Ⅲ. 직원의 인사에서는 시험의 방법으로 서류전형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기관에서는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 경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합격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에서는 2020년 및 2021년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및 사무보조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시 응시자들이 제출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표 5]와 같이 경력·경험과의 관련도, 적응능력 및 활용 가능성, 현장수행 적합도 등의 주관적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채점하였다.

[표 5] 1차 서류전형 방법 및 채점표 서식

채용공고일	전 형 방법(공고)	1차 서류전형 채점표						
	전형요소							
2020.○.○. 2021.☆.☆.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직무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경력· 관	경험과의 ·련도		·격증 등 적합도	적응 활용	능력 및 가능성	심사결과 (가·부)
		적 합	부적합	적 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직무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평정	요소				
2020.△.△.	·평가항목 - 필수요건: 자격기준	필수	우요소			일빈	·요건			심사결과
2021.♦.♦.	- 일반요건: 담당예정직무의 현장수행 적합도, 경력과의 관련도,		력 등 부기준		당수행 합도		과의 련도	적응: 활용	등력 및 가능성	(가·부)
	정역파의 판단도, 적응능력 및 활용 가능성	적합	부적합	적합	부작합	적합	부합	적합	부적합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구체적인 채용 우대기준 미명시

행정안전부 지침 Ⅲ. 직원의 인사에서는 채용시험 실시할 때에는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가점기준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기관의 직원 채용공고 시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 기준, 가점이 있는 경우 가점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에서는 2020년 사무보조원 채용 시 채용계획서에는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공고문에는 우대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표 6] 참조)

2020년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채용공고 시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를 [표 6]과 같이 명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우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평가(채점) 시에도 [표 5]와 같이 우대사항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표 6] 채용 시 우대사항

레 유고 그 이/레 유 브 시	우대사항				
채 용공고일(채용분야)	계 획 서	공 고 문	비고		
2020. ○. ○.(사무보조)	·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 우대	미명시			
2020.☆.☆.(기간제 계약직)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 (주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자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개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맞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용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표 1]과 같이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다.

[표 1] 환경개선 공사 계약내용

(단위:원)

공 사 명	계약금액 (a+b)	도급액 (a)	관급자재 (b)	계 약일	계약상대자	ㅁ
◇◇공사	167,404,700	133,098,940	34,305,760	2021. 🔾 . 🔾 .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지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에서 중소기업자 생산여부를 확인하고 직접구매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에서는 [표 2]와 같이 책상 등 직접구매 대상 물품(총 34,305,76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통하여 동일한 물품을 직접 구입·지출(총 38,709,250원) 하였다.

이처럼 책상 등 관급자재를 진흥원에서 직접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관급자재 비용(총 34,305,760원)을 포함하여 공사 준공금을 청구하였으며, 진흥원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관급자재 비용(총 34,305,760원)을 포함하여 공사 준공금을 지급하였다.

[표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출현황

(단위:원)

① 공사 설계	및 준공 지급	② 직접구미	비고	
품 명	설계(준공)금액	품 명	지출금액	-1
L형책상 등 15종	34,305,760	L형책상 등 14종	38,709,25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이에 대해 진흥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금액을 환수(2021.6.16.)받고, 반납처리를 완료(2021.6.21.)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에 대한 판단)

「지방계약법」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에 따라 공사계약에 대한 준공 검사 및 준공금 지급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주의) 계약업무 및 계약 감독업무 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평생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용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시민대학 지정·운영의 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기관으로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회계사무의 처리) 및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7)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통장사본, 지출증빙 등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제6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동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과업지시서의 작성, 계약상대자의 선정(나라장터 등 이용), 감독관의책무,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7)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사업비는 해당 예규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조사업과 용역계약은 사업의 성격, 계약 상대자(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정산방법 등절차와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의 성격 등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집행할지 용역계약 사업으로 집행할 지를 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에서는 [표]와 같이 2019년 및 2020년 '생애주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장년, 직장인)'의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지침'(진흥원)에 따라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출증빙서류로 정산하였으며, 2020년 및 2021년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학습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단법인 마중물과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자격 및 설비 등이 요구되지 않는 유사한 성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계약상대자) 선정 및 사업비 정산(준공)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방식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방식을 혼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사단법인 마중물과의 용역 수의계약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수행 시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를 지출하였으며, 업체 선정 시에도 공모가 아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보조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이 저해되었다.

[표] 평생교육 사업의 수행방식 현황

(단위:백만원)

프로그램명		사업자 선정방식	정산방식	보조금액 (계약금액)	보조사업자 (계약상대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 평생교육 2019			「지방보조금	111	A 등 8개		
프로그램(중장년)	2020	공모 ·	관리기준 _	125	B 등 10개		
2019 △△평생교육 프로그램(직장인)		심사 선정	(행정2전부에규 및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지침'(진흥원)	61	C 등 5개		
2021 △△ 평생교육 프로그램(중장년+직장인)				85	D 등 9개		
○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교육과정							
2020 😂 학습 사업 용역 계약 2021 😂 학습 사업 용역 계약		1인견적	[T]HL74 OLH4	9	Е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11	F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주의)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사업과 용역계약 사업을 혼용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시 정 요 구

제 목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용

1. 연도 말 예산의 몰아쓰기 부적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면 예산 집행은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쓰기를 방지하도록 하면서, 특히 연말 몰아쓰기 집행사례로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사례'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억제하고 연말에 무리한 집행 잔액의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표 1]과 같이소모품 및 홍보물품 구입비용으로 2018년 12월에 17,794천원(결산액 대비 49%), 2019년 12월에 2.354천원(결산액 대비 28%)을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1] 연도 말 집행 현황

(단위 : 원/%)

년도	예산과목	예산액	결산액	12월 지출액	결산액 대비 12월 지출비율	비고
	계	93,411,000	44,483,625	20,148,134	45.2	
201013	206소모품비	14,411,000	10,716,290	4,027,750	37.6	소모품 구입
2019년	218행사홍보비	70,000,000	25,586,605	13,766,374	53.8	홍보물품 구입
2020년	206소모품비	9,000,000	8,180,730	2,354,010	28.7	소모품 구입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및 면제대상에 대한 징구

「지방공기업법」제19조(지방채 등) 및「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대금청구 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범위로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제4호에 의거 토목 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등 환경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아울러 채권 매입금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진흥원에서는 [표 2]와 같이 2018년 11건, 2019년 6건 등 총 17건, 200만원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에 대하여 2,890천원의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징구하지 않은 채 청구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2]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현황

(단위 : 원)

지출내역	지출일자	지출금액	공채매입금액	비고	
시눌내덕	시물될자	시눌금액	매입금액	매입기준	(지출처)
17건		146,147,290	2,890,000		
-	2018.08.20.	9,900,000	195,000	2/100	А
-	2018.09.06.	2,200,000	40,000	2/100	В

지출내역	지출일자 지출금액 -		공채매입금액	및 기준	비고
시눌내칙	시물될사	시물금백	매입금액	매입기준	(지출처)
-	2018.10.02.	11,200,000	220,000	2/100	С
-	2018.11.22.	2,538,140	50,000	2/100	D
-	2018.12.13.	2,790,000	55,000	2/100	E
-	2018.12.17.	2,215,400	40,000	2/100	F
-	2018.12.14.	19,000,000	380,000	2/100	G
-	2018.12.21.	2,465,100	45,000	2/100	Н
-	2018.12.20.	2,500,000	50,000	2/100	Ι
-	2018.12.20.	2,500,000	50,000	2/100	J
-	2018.12.31.	20,961,550	415,000	2/100	К
-	2019.01.	13,115,850	260,000	2/100	L
-	2019.09.16.	22,000,000	440,000	2/100	Μ
	2019.07.04.	8,640,000	170,000	2/100	Ν
_	2019.11.21.	2,100,000	40,000	2/100	0
_	2019.11.18.	2,021,250	40,000	2/100	Р
_	2019.12.27.	20,000,000	400,000	2/100	Q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건설공사도급 계약 건이 아닌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하여 지역개발 채권이 면제임에도 불구하고 [표 3]과 같이 진흥원 사무실 환경개선 통신 공사 등 3건에 대하여 1,580천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였다.

[표 3] 면제대상 공사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징구

(단위 : 원)

공 사 명	지출일자	TI ᄎ 그 애	공채매입금액	· 비고		
5 17 8	시눌될사	지출금액	매입금액	매입기준	- 1 - 2 	
3 건		80,521,140	1,580,000			
-	2021.06.09.	34,086,000	680,000	2/100		
-	2021.06.07.	37,275,000	745,000	2/100		
-	2021.06.09.	9,160,140	155,000	2/1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 (주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의거 월별집행계획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도 말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규정 및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시정) 징구 누락된 지역개발채권 2,890,000원에 대하여 즉시 매입 조치 후 회계서류 보완 조치하시고, 향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용

(재)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에 관해서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1. 여비 및 시간외수당 중복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국내 출장 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불가하며,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근무명령의 절차를 거치고 초과근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에서는 [표 1]과 같이 2018년, 2019년, 2021년 공휴일(토, 일)에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에 대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동시에 130천원의 출장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였다.

⁸⁾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바. 출장

⁹⁾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VI.초과근무 수당 등 8.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표 1] 휴일 출장여비 지급 현황

(단위 : 원)

구분	대상자	지급여비	비고
계		130,000	
2018년	A외 1명	60,000	
2019년	B외 3명	50,000	
2021년	С	20,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근거리 출장에 대한 여비 과다 지급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10)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하며, 실비 상한액은 4시간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하며,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아니하고, 운임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진흥원에서는 [표 2]와 같이 2018년 7월부터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253건에 대하여 실비 지급대상 확인을 하지 않고 실비 상한액을 지급함으로써 3,110천원의 출장여비를 과다지급하였다.

[표 2] 근거리 출장 여비 지급 현황

(단위 : 원)

구분	대상자	지급여비	비고
계		3,110,000	
2018년	A외 13명	1,360,000	
2019년	B외 20명	1,550,000	
2020년	C외 7명	180,000	
2021년	D외 1명	20,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¹⁰⁾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2. 여비지금 기준, 마. 근거리 출장

3. 출장 조기 복귀자에 대한 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출장 여비는 실제 출장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 복귀 시 또는 시간 미충족 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에서는 [표 3]과 같이 출장조치 후 4시간이 경과되지 않고 조기 복귀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처리하고 여비를 지급하였다.

[표 3] 출장 시 전자결재 사용 내역 현황

(단위 : 원)

일자	대상자	출장일시	전자결재 사용내역 (출장시간 내 출장지 접속(열람) 시간)		지급여비	출장사유
소계						
2021.03.15	А	10:30 ~ 14:30	13:11	***	10,000	○○회의 참석
2021.03.05	В	14:00~18:00	15:26		10,000	△△운영물품구입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시정) 중복 및 초과 지급한 출장여비 3,260,000원(시간외수당과 여비 중복 지급 130,000원, 근거리 출장 여비 지급 3,110,000원, 조기복귀자 여비지급 20,00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시고, 관계 규정에 대한 충분한 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보수규정」제20조(퇴직금) 제1항에는 "계속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근무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표 1]과 같이 2018년 7월 부터 현재까지 9명에게 약 90,000천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

[표 1] 퇴직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지급년도	대상자	근무기간	퇴직일	지급금액	비고
		90,002,996			
2018년	А	2016.09.08. ~2018.09.07.	2018.09.08.	6,314,586	
2019년	В	2016.05.16. ~2019.05.15.	2019.05.16.	22,009,968	
	С	2014.02.07.~2018.12.31.	2019.01.01.	15,594,683	
	D	2018.06.11.~2019.06.10.	2019.06.11.	2,590,630	
	E	2017.02.02.~2019.02.01.	2019.02.02.	16,929,959	
	F	2017.06.05. ~2019.05.10.	2019.05.11.	8,788,050	
	G	2018.05.14. ~2019.10.10.	2019.10.11.	3,539,950	
2020년	Н	2017.05.15.~2019.11.07.	2020.01.31.	6,719,960	
	I	2019.07.17.~2020.09.20.	2020.09.21.	7,515,21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산정기준11)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과 수당, 연차 수당 의 3/12. 상여금의 3/12를 합하여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을 산출하고,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월 평균 임금을 산출 후 근무일수/365를 곱하 여 산정한다.

그러나 진흥원에서는 [표 2]와 같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일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 수당을 전액 반영하여 퇴직금이 과다 산정 되었다.

[표 2] 퇴직금 과다 지급 내역

(단위 : 원)

연번	지급대	내 상 자	지급액	저저지그에	착오지급액	비고
전원	소속	성명	시합책	적정지급액		
계	2명	계	23,244,545	19,707,661	3,536,884	
1	인천인재평생	E	16,929,959	13,968,240	2,961,719	
2	교육진흥원	А	6,314,586	5,739,421	575,165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시정) 착오 지급된 퇴직금 3.536.884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계 규정 숙지 등 해당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¹¹⁾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¹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자격증 수당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용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규정집」(이하 '진흥원 규정집'이라 한다.) 수당규정에 따르는 수당 지급 기준표는 [표 1]과 같다.

[표 1] 수당 지급 기준표¹²⁾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시간외 수당	○ 월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 전체 합계(기본월액+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월 통상임금 산전기준 시간 수(209시간)×1.5×초과근무 시간 수				
연차수당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월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 전체 합계)÷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8시간×보상일수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계산 방법: (주 소정시간 40시간+소정근고시간외 유급처리되는 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209시간				
	직 책	월 지급액			
직책수당	원장	500,000원			
	사무처장	400,000원			
	적용기준직급	월 지급액			
	1급	400,000원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2급, 선임연구원	250,000원			
76229	3급, 연구원	155,000원			
	4급, 부연구원	140,000원			
	5급	105,000원			
	적용업무	월 지급액			
- 특정업무수행경비	경영평가	80,000원			
7081100-1	예산, 결산	40,000원			
	※ 팀장은 지금	급하지 아니함.			
대민업무수당	장학금 지급업무	50,000원			
7128110		급하지 아니함.			
	구 분	월 지급액			
자격증 수당	평생교육사 1급	100,000원			
	평생교육사 2급	50,000원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¹²⁾ 특정업무수행경비, 대민업무수당, 자격증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사항 중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함.

진흥원 규정집 수당규정 제11조(특정업무수행경비)¹³⁾ 및 제12조(대민업무수당)¹⁴⁾에는 직무에 종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진흥원 규정집수당 규정 제13조(자격증 수당)에 "재단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소지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¹⁵⁾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표 2]와 같이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 없이 자격증 소지만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2] 자격증 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원)

구분 이름		월 지급액	업무	소지자격증	
계		550,000			
	А	50,000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사1급	
	В	50,000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사2급	
	С	50,000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사2급	
	D	50,000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사2급	
	Е	50,000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수당	F	50,000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사2급	
	G	50,000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사2급	
	Н	50,000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사2급	
	I	50,000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사2급	
	J	50,000 이사회, 제규정 등		평생교육사2급	
	K	50,000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사2급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¹³⁾ 재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영평가, 예산・결산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¹⁴⁾ 재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¹⁵⁾ 평생교육사 1급 100,000원, 평생교육사 2급 50,000원

(관련기관 의견)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 평생교육사 자격 수당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역시 관련 업무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법령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 독려를 목적으로 신설된 수당 규정으로 실제 순환 보직으로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평생 교육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해당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의견에 대한 판단)

-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에 의거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는 채용 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으로 판담됨
- 타 시·도 복리후생제도 현황 비교를 보면 대전평생교육진흥원만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전에서 관련 업무 수행 여부 상관없이 자격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동일하게 규정할 근거는 없음
- 실제 순환 보직으로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개선)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규정집」수당규정을 검토하시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장학금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용

1. 장학금 신청 서류 보관 소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장학사업단에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장학금 신청 및 선발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장학금 신청 및 선발 현황

(단위 : 명/천원)

구분	선발계획인원	신청인원	선발인원	장학금지급금액	비고
계	3,498	7,624	3,421	3,711,109	
2018년	1,080	1,799	976	1,167,644	
2019년	1,038	2,246	1,119	1,203,725	
2020년	1,380	3,579	1,326	1,339,740	코로나19특별 장학금제외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장학사업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의거, 현재 장학금 선발 대상자에 대한 서류만 보관하고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장학금 선발 후 약 2주간 보관 후 폐기하고 있다.

개인정보 관련 서류이나 장학금 관련 서류는 선발 후 민원 대비 및 장학생 선발 적정성 감사 등 행정업무에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일정 기간 동안 행정 업무의 참고 또는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 증명 필요 등에 따라 보존 기간 책정)에 의거 적정한 문서보존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나,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규정집 사무관리규정 제37조(보존기간) 및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는 장학금 관련 서류에 대한 내용이 없다.

2. 장학금 선발 심사 기준 부적정

진흥원에서는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등 9개의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장학금은 목적 및 기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학금별공정한 선발을 위하 여 목적에 맞는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장학 사업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응원장학금이 있으며, 심사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응원장학금 서류심사기준표

	_ = = =			
	고등학생			비고
구분	재 학	대학생	점수	
	(대학 신입)			
	기준중위소	60점		
	기준중위소	56점		
가정형편(40점)	기준중위소	·득 80%이하	52점	
중위소득	기준중위소	·득 90%이하	48점	
	기준중위소	득 100%이하	44점	
	기준중위소	득 120%이하	40점	
	1.51~1	4.31~4.5	30점	
	2.01~1.5	4.11~4.3	28점	
	2.51~2	3.91~4.1	26점	
	3.01~2.5	3.71~3.9	24점	
M TJ (00TJ)	3.51~3	3.51 ~ 3.7	22점	
성적(30점)	4.01~3.5	3.31~3.5	20점	
	4.51~3.5	3.11~3.3	 18점	
	5.01~4.5	2.91~3.1	16점	
	5.51~5	2.71~2.9	14점	
	6~5.5	2.5~2.7	12점	
A		상	10점	
자기소개서 (10점)		중	9점	
(10'=)		하	8점	
가정형편 증빙 (5점)	폐업신고서, 실직증명서	, 3개월간 급여명세서 등	5점	
	최근 62	개월 이내	 15점	
경제적 어려움 기간 (15점)	1년	이내	10점	
(15智)	1년	이상	5점	
추가배점 [중복 가능]			5점	
	100점 (최고 105)			

응원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심사 배점과 가정형편 및 성적 배점 비교 시 배율이 부적정하며, 가정 형편 증빙자료는 필수 증빙자료로 별도의 배점이 필요치 않음에도 별도의 심사 기준 으로 되어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홍원 이사장은

- (개선) ① 장학금 신청 서류 보존기간을 책정하여「(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규정집」 사무관리규정 제37조(보존기간) [별표 1]을 개정하시고, 장학금 신청 서류 보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응원장학금 지급 목적에 맞게 가정 형편 증빙,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심사 배점과 가정형편 및 성적 배점의 적정한 기준 마련하시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